

<2015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>

구 분	현 행	개 정		
① 풍수해보험Ⅱ “보험가입동의서” 서식 간소화 (가입동의서 개정)				
◇ 보험가입동의서	○ 총 3장	○ 총 1장		
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변경(예정)에 따른 풍수해보험 적용 (대상기준 개정)				
◇ 기초, 차상위 대상기준	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개정시점에서, 풍수해보험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현행화 ⇒ 변경적용 예정일('15.7월) (기초/차상위 기준) 최저생계비 이하(140만명/ 340만명)	(기초) 별도 설정한 개별급여방식 기준(220만명, ↑80만명) (차상위) 중위소득 50% 이하의 가구(430만명, ↑90만명)		
③ 풍수해보험 온실 보험료 월납분할(12회) 납입방법 판매중지 (기초서류 개정)				
◇ 온실보험료 분납방식	○ 월납(12회 분납), 4회 분납, 2회 분납, 일시납	○ 4회 분납*, 2회 분납**, 일시납 * 1회차(40%), 2회차(30%), 3회차(20%), 4회차(10%) ** 1회차(70%), 2회차(30%)		
④ 약관상, “보상하는 재난기준” 및 “이미 진행 중인” 용어 정의 명확화 (약관 개정)				
◇ 보험약관 용어 정의	○ (보상하는 재난기준) “기상특보” 기준 변경 시, 약관에서 즉시반영 할 수 있도록 개정 적용 ○ (이미 진행 중인) 기상청(홍수통제소 포함) 기상특보(주의보·경보) 또는 예비특보 발령시점 기준으로 정의 명시			
⑤ 단체계약 특성을 고려한, 풍수해보험(Ⅱ) 약관조항 신설 및 개정 (약관 개정)				
◇ 보험약관 조항 신설개정	○ (신설조항) ①가입동의서 작성 의무화 및 서식(명시) ②계약(계약자·피보험자)의 적용범위 ③개인정보보호 조항 ○ (개정조항) 보험계약 무효사유의 사례별 명시 보완 등			
⑥ 최근 풍수해보험 사고실적을 반영, '15년 풍수해보험 요율 조정 (기초서류 개정)				
◇ 풍수해보험 참조 순 보험료율(보험개발원 공시) : 주택, 온실 전체 평균 4.2%선 이하				
※ 산출기준 : 기준금액 90%형(I·Ⅱ), 실손형(Ⅲ), 주택 80㎡, 온실 500㎡				
구 분	현 행	개 정	조정 폭	
풍수해보험 I·Ⅱ	주택(평균 14.4%선 이하)	62,400원	53,400원	9,000원 ↓
	온실(평균 5.8%선 이하)	251,400원	265,900원	14,500원 ↑
풍수해보험 Ⅲ (평균 11.9%선 이하)	132,400원	116,600원	15,800원 ↓	